

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1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강석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최유희, 최진혁 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지원수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또한,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,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없애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원자폭탄 피해자’와 ‘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’의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나.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피해자 지원”을 “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”으로, “원자폭탄 피해자의”를 “이들의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원자폭탄 피해자”란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”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·모·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

제3조 중 “원폭피해자”를 “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(이하 “원폭 피해자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원폭피해자”를 “원폭피해자등”으로, “수립하여”를 “수립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원폭피해자”를 “원폭피해자등”으로 하며,

같은 항 제3호 중 “원폭피해자”를 “원자폭탄 피해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원폭피해자”를 “원폭피해자등”으로 한다.

4.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

제5조의 제목“(원폭피해자 지원사업)”을“(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원폭피해자”를 각각 “원폭피해자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6조 및 제8조로 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수당 지원) ① 시장은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.

1. 전출,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

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10조)의 제목“(원폭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”을“(원

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원폭피해자가”를 “원폭피해자등이”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11조)제1항 중 “원폭피해자는”을 “원폭피해자등은”으로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원폭피해자”를 “원폭피해자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7조)제1항 중 “원폭피해자”를 “원폭피해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수립에”를 “수립”으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9조) 중 “원자폭탄피해자”를 “원폭피해자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원자폭탄 <u>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<u>피해자(이하 “원폭피해자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사람과 그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----- 이들의 -----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<u>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“원자폭탄 피해자”란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.</u> 2. <u>“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”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 하였으나 부·모·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</u>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2. (생략)
3. 원폭피해자 추모와 관계되는 사항

<신설>

4. (생략)
5. 그 밖에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

제3조(책무) -----
-----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(이하 “원폭피해자등”이라 한다)-----
-----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-----
----- 원폭피해자등-----
----- 수립 및 -----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원폭피해자등-----
2. (현행과 같음)
3. 원자폭탄 피해자 -----

4.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6. ----- 원폭피해자등 -----

사항

제5조(원폭피해자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원폭피해자의 건강상태,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5조(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) ① -

-- 원폭피해자등 -----

--.

② -----

----- 원폭피해자등 -----

-.

제9조(실태조사) ① -----

----- 원폭피해자등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

수당 지원) ① 시장은 원자폭탄

피해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

지원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.

1. 전출,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

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제7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원계획 수립에의 자문
2. 3. (생략)

제8조 (생략)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원자 폭탄피해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,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원폭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 시장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원폭피해자가 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

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--
----- 원폭피해자등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----- 수립-----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 원폭피 해자등 -----

-----.

제6조(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 -----

----- 원폭피해자등이 -----

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립
병원에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는
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
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지원신청) ① 이 조례에 따
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
자는 피폭자건강수첩 등의 증빙서
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
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2조 (생략)

-----.

제8조(지원신청) ① -----
----- 원폭피해자
등은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를 원자폭탄 피해자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늘어나 관련 비용이 발생함
 - [지원대상 확대] 본 안 제6조(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, 제9조(실태조사)는 대상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함
 - [기추진 사업] 본 안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, 제5조(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), 제7조(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수당 지원)는 비용이 발생하나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(붙임 참고)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연번	관련 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	×	기추진 사업으로 비대상 판단
2	제5조(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)	×	
3	제6조(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	○	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4	제7조(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수당 지원)	×	기추진 사업으로 비대상 판단
5	제9조(실태조사)	○	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-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(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, 제9조(실태조사)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련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관련부서 문의결과 “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¹⁾으로 하는 질병”을 앓고 있는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통계²⁾가 없어 현재로서는 제6조(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에 대한 추가재정소요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
 - ※ [참고]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<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³⁾>를 주제로 피폭과 질병의 인과성 및 유전적 영향을 분석⁴⁾한 적 있음

1) 본 개정안 제6조(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) 시장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원폭피해자들이 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) 질병원인 변수(나이, 주변환경 등)가 다양해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움

3) 한국보건사회연구원('19.7~'20.3) 연구수행

4) (연구한계) ①생존자만 분석하여 원폭노출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, ②흡연·음주 등의 혼란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것, ③ 한정된 표본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결과해석에 신중할 필요

※ 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비용 산식

$$\text{산출방식} = \sum_{i=1}^5 [(\text{원폭피해당사자} + \text{원폭피해당사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피폭관련 질병환자}) \times 1\text{인당연간진료비}]_i$$

$i = \text{비용추계 연차}(2025\text{년} \sim 2029\text{년})$

① [지원대상] 원폭피해 당사자에 대한 관련 통계는 있으나, 당사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피폭관련 질병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음

② [지원비용] 1인당 연간진료비로 지원할 경우,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 중인 원폭피해자지원사업의 진료비 지원⁵⁾을 준용하여 최대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, 현재 정책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어 추계가 곤란함

※ [참고]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며, 원폭피해 당사자에게 진료비 및 보건의료비, 진료보조비(보험료 납부,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) 등을 지원하고 있음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5) 도일(渡日)치료 지원 :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연 30만엔(¥) 범위내에서 지원

[붙임] 2024년 서울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예산

□ 사업목적

- 서울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으로 원폭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논의하고자 함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- 지원대상 : 서울지역 원폭피해 당사자 및 그 자녀, 손자녀
- 사업의 주요내용 : 서울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
 - 서울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개최(본회의 3회)
- 소요예산 : 102,000천원(전액 시비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통해 원폭피해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의 자문 및 평가 수행

□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	
사무관리비	○ 서울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	=	3,000
	- 위원회 수당	=	2,700
	▷ 본회의 150,000원*6명*3회		
	- 위원회 운영비	=	300
	300,000원		
사회보장적수혜금 (취약계층, 지방재원)	○ 서울시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	=	99,000
	99,000,000원		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설명서 발취